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97. 10. 18.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10. 10. 김유현 의원 외 31인
- 나. 회부일자 : '97. 10. 16.
- 다. 상정일자 : 제4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7. 10.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유현 의원)

가.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등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의 출연금등으로 함. (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함. (안 제3조)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함. (안 제8조)
-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겸 토보고의 요지 (김건재 전문위원)

-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의한 노력의 결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의 평균수명이 '60년 52.4세에서 '85년 68세, '95년 73.5세로 연장되었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6년 5.9%에서 2000년대에는 7.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995년 우리나라 최저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18.5%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히 거액보호자 중 35.7%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빈곤층 인구의 1/3이 노인들임.
- 이와 같이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극빈노인층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이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동 조례를 발의함은 시의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됨.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적립방안과 운용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생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기금이 조성되면 지금보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 답변요지(임채명 가정복지과장) : 연차적으로 1억 원씩 5년 동안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게됨.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1억 원씩 투입하는 것보다 100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 답변요지(김유현 의원) : 예산편성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일반회계출연금,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출연금 등 내용이 막연한데 더 검토하는 게 어떤가?
- 답변요지(김유현 의원) : 원래 지정기탁금 및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기금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부에 질의하였더니 안된다고 했음.
- 질의요지(김충환 위원) : 노인들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회비를 걷어 노인후원회를 만들어 노인정을 돋는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가?
- 답변요지(염을렬 시민국장) :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검토해 보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일자 : 1997. 10.

제안자 : 김유현 의원 외 23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등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의 출연금등으로 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5조)
- 라.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함.(안 제8조)
- 마.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0조)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 제133조
- 나. 지방재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 제110조

4. 예산조치 : 필요(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

5. 첨부

- 가.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
- 나. 구별 노인복지기금 조성 현황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 지도 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5. 노인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단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기획실장·재무국장·보건소장

2.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장

3. 마포구의회의원 2명

4. 기타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區別老人福祉基金造成現況

연번	구 명	조례 및 규칙제정	기금 적립 현황	기금조성 방법	비 고
01	본 청	조례, 규칙	100억	시자체예산	'94년도
02	종로구	조례, 규칙(공포X)	1억	구자체예산	'97년도 추경예산 편성 (구의회 발의)
03	광진구	조례	3천만원	'97년예산편성시	운영 계획 - 2억 조달때까지 적립
04	성북구	조례, 규칙	3억원	구자체 예산	
05	노원구	조례	미 정	년차적 조성	5억원적립목표
06	서대문구	조례, 규칙	8천2백만원	'97년 예산 편성시	5억 적립목표
07	양천구	조례, 규칙	4천만원	구자체예산	'96년도 기편성 3년동안 예치후 시행 (6억 조성 예정)
08	구로구	조례	미 정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98년도 예산편성 예정
09	송파구	조례	3천만원	구자체예산	
10	용산구	조례	1억원	구자체 예산	5억 조성시까지 적립